

보도설명자료

(‘20. 1. 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
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(조선일보, 1.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- ◇ 1월 21일 조선일보 <친환경 선박 연료,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정부가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, 선박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에 장애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은 없음
 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은 선박용 연료로 사용 가능한 석유 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제한하지 않음
 - 따라서 선박용 연료로 경유, 중유 등 석유제품이나 바이오중유 등 석유대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음

※ 문의: 윤창현 석유산업과장(044-203-5220) / 송홍석 사무관 (044-203-5224)